
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건태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철도시설관리자가 그 시설을 설치·관리할 때에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명시함(안 제14조제2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